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20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위성곤·정춘숙·허 영

김진애・박 정・박재호

이워택 • 유재갑 • 민홍철
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,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'먹튀여행사'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는 실정임.

이처럼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,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는 상황임.

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은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 및 같은 법 제355조(횡령·배임)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는 「관광진흥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,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.

이에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, 횡령,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,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47조 및 같은 법 제355 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(여행업의 등록등・신고・승인 등에한정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	제7조(결격사유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	
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	
를 할 수 없고, 제15조제1항 및	
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	
을 받을 수 없다. 법인의 경우	
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	
경우에도 또한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
	「형법」 제347조 및 같은 법
	제35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
	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
	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
	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
	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
	예 기간 중에 있는 자(여행업
	의 등록등・신고・승인 등에
	한정한다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